

- ① 규전의 토지는 장(長)과 광(廣)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
- ② 직전의 토지는 장(長)과 평(平)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
- ③ 원전의 토지는 반원주(半圓周)와 반경(半徑)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
- ④ 호전의 토지는 내주(內周)와 외주(外周)를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

11. 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?
- ① 일필일목의 원칙
 - ② 사용목적추종의 원칙
 - ③ 용도경중의 원칙
 - ④ 일시변경가변의 원칙
12.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목
 - ② 소유자
 - ③ 소재
 - ④ 경계
13.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1916년에 시험조사부터 시행하여 1921년에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.
 - ② 조사대상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의 개재지(介在地)로 구성하였다.
 - ③ 조사방법 및 절차는 토지조사와 유사하였으며 임야 대장 등록지는 도지사의 사정지와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지라 할 수 있다.
 - ④ 1918년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, 발포하였다.
14. <보기>는 지적불부합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. ㉠~㉣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?
- <보기>

㉠ 일부 기준점의 위치변동에 의한 경계결정 착오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

㉡ 삼각점 또는 도근점의 계열과 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시의 측량오류와 국지적인 측량성과로 인한 오류로서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

㉢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나 등록된 경계위치와 현실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
- | | ㉠ | ㉡ | ㉢ |
|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① | 편위형 | 공백형 | 지형변동형 |
| ② | 편위형 | 위치오류형 | 지형변동형 |
| ③ | 위치오류형 | 공백형 | 불규칙형 |
| ④ | 불규칙형 | 공백형 | 위치오류형 |
15. 등기기록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.
 - ②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.
 - ③ 지상권에 관계되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.
 - ④ 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의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.

16. 조선시대에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사람과 양전개정방안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정약용 - 경무법
 - ② 이기 - 망척제
 - ③ 서유구 - 수등이척제
 - ④ 유길준 - 전통제
17. 지적의 발생설이 아닌 것은?
- ① 과세설
 - ② 치수설
 - ③ 지배설
 - ④ 환경설
18. 국제표준으로 공포된 토지행정도메인모델(LADM, ISO 19152)의 핵심 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당사자(party)
 - ② 지적 필지(cadastral parcel)
 - ③ 공간 단위(spatial unit)
 - ④ 측량 및 표현(surveying and representation)
19.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총회는 불복 또는 재심 신청 건수를 재결하기 위해 구성하였다.
 - ②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다.
 - ③ 최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.
 - ④ 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20.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구속력: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.
 - ② 공정력: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이다.
 - ③ 확정력: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.
 - ④ 강제력: 유효하게 된 표시사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효력을 다룰 수 없고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를 다룰 수 없다.